

의정활동보고서

제202회 임시회(2005. 10. 13 ~ 10. 2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독도의 달인 10월을 맞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 하면서, 분골쇄신 독도를 지킬 것을 거듭 천명하면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늘 제202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난달 26일
문경새재에서 개최된 2005년도 의원 연수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방폐장 유치 등 도정과 교육행정의 당면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성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제관 여러분!
문화의 계절인 10월은 주민화합과 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가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공연장 참사에 대해 먼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상 안이한 대책과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획일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축제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행사 경비 지출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혀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확인 등을 위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주요시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공백은 없는지? 눈 여겨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든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어 지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 례 안

1. 경북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승 인 안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괄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13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7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9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0월 13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도정질문(우성호·임원식·장미향·김정기·김석호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10월 27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방대선의원)을 청취한 후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의결하고, 국제친선 교류 활동 결과보고를 끝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5-15호(2005년 8월18일,목)

라. 집회일시 : 2005년 10월 13일(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년 10월 13일 ~ 10월 27일 (1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84회)

○ 상임위 회의 : 9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0. 13(목) 11:00 (제1차)	1. 제2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0. 13(목) 11:00 (제1차)	5. 5분 자유발언 ○ 우성호 의원 (영주시, 경제문화) ○ 임원식 의원 (울진군, 경제문화) ○ 장미향 의원 (상주시, 교육환경) ○ 김정기 의원 (김천시, 경제문화) ○ 김석호 의원 (구미시, 행정사회)	
2005. 10.27(목) 11:00 (제2차)	1. 5분 자유발언 ○ 방대선 의원 (성주군, 행정사회)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7건) 3. 경북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6. 경상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7. 국제 친선교류 활동 결과보고 (2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27(목) 10:00(제1차)	○ 제20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0. 13(목) 13:30(제1차)	○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0. 18(화) ~10. 20(목)	○ 타 시·도 첨단사업시설 방문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0. 18(화) ~ 10. 19(수)	○ 현지확인 · 사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우주봉의 집) · 오지개발사업 -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외 1건 - 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	성주군 가천면 김천시 감문면
2005. 10. 25(화) 13:30(제1차)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0. 24(월) 10:30	○ 포항교육청 업무보고 및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포항교육청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25(화) 10:00(제1차)	○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 10. 25(화) 14:00	○ 청송교육청 업무보고	청송교육청
2005. 10.26(수) 10:30	○ 칠곡교육청 업무보고 및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칠곡교육청

〈농정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13(목) 14:00(제1차)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2005. 10. 18(목) ~10.19(수)	○ 현지확인 - 구미화훼시험장, 상주감시험장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13(수) 14:00(제1차)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2005. 10. 14.(금) ~10.16(일)	○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참석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13.(목) 14:00(제1차)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14.(금) ~10.15(토)	○ 현지방문 - 화북댐 건설 공사현장 -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25.(화) 16:00(제1차)	○ 사회노인복지과 사무 중 소관분야	

〈전국체육대회지원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0. 27.(목) 14:00(제1차)	○ 전국체전기획단 업무보고	김천실내 체 육 관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5 (341)	5 (337)	3 (296)	2 (39)	(2)	(2)		
조 례 안	소 계	4 (166)	4 (164)	2 (142)	2 (21)	(1)		(2)	
	의 회 제 안	1 (18)	1 (18)	(7)	1 (10)	(1)			
	도지사 제 출	3 (120)	3 (118)	2 (109)	1 (9)			(2)	
	교육감 제 출	(28)	(28)	(26)	(2)				
예산 · 결산		(30)	(29)	(15)	(14)		(1)		
동의 · 승인		1 (83)	1 (83)	1 (82)	(1)				
건 의 안		(12)	(12)	(11)	(1)				
결 의 안		(15)	(15)	(14)	(1)				
기 타 안		(35)	(34)	(32)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4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 류
		가 결							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5 (343)	5 (335)	4 (164)	(29)	1 (83)	(12)	(15)	(32)	(2)	(2)	(4)
의 회 운 영	(16)	(15)	(7)				(5)	(3)	(1)		
기 획 과 학	2 (28)	2 (27)	2 (16)		(7)	(2)	(1)	(1)			(1)
행 정 사 회	1 (91)	1 (90)	1 (63)		(24)	(1)	(2)				(1)
교 육 환 경	1 (48)	1 (48)	1 (35)		(11)	(1)		(1)			
농 정	(20)	(20)	(7)		(11)	(2)					
경 제 문 화	(46)	(46)	(20)		(22)	(2)	(2)				
건 설 소 방	(22)	(22)	(12)		(7)	(2)		(1)			
특 별	(30)	(30)		(29)				(1)			
본회의	1 (42)	1 (37)	(4)		1 (1)	(2)	(5)	(25)	(1)	(2)	(2)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138)	(15)	2 (17)	(12)	1 (32)	(9)	(9)	(14)	(12)	2 (18)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 (14)		(1)		1 (9)		(2)			(2)
행 정 사 회	2 (22)	(10)	(4)	(1)	(2)					2 (5)
교 육 환 경	(26)			(1)		(9)		(13)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2 (30)	(2)	2 (12)	(4)			(7)			(5)
건 설 소 방	(34)	(3)		(5)	(20)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136)	3 (136)				2 (2)
의회운영						
기획과학	1 (14)	1 (14)				
행정사회	2 (22)	2 (22)				
교육환경	(26)	(26)				
농 정	(9)	(9)				
경제문화	(28)	(28)				2 (2)
건설소방	(34)	(34)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5. 9. 30)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과학 (2005. 9. 30)
경상북도지사 (2005. 9. 30)	경상북도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과학 (2005. 9. 30)
경상북도지사 (2005. 9. 30)	경상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5. 9. 30)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5. 9.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2005. 9. 20
2005. 9. 1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005. 9. 20
2005. 9. 13	경상북도 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2005. 9. 22

VI. 기타사항

○ 제14회 교육감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시상식

- 일 시 : 2005. 9. 14(수) 17:00
- 장 소 : 문경시민운동장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이사회

- 일 시 : 2005. 9. 15(수) 16: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준공식

- 일 시 : 2005. 9. 16(금) 10:00
- 장 소 : 안동시 안막동 현지
- 참 석 : 김선종 의원

○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5. 9. 22(목) 10: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 장미향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 일 시 : 2005. 9. 22(목) 10:30
- 장 소 : 청도 고수부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경북 근로자복지연수원 건립 기공식

- 일 시 : 2005. 9. 22(목) 11:30
- 장 소 : 청도읍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5. 9. 22(목) 15:00
- 장 소 : 경상남도의회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50차 대경콜로키움 토론회

- 일 시 : 2005. 9. 22(목) 16:00
- 장 소 : 대구그랜드호텔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 다둥이가족 행복쌓기 걷기대회

- 일 시 : 2005. 9. 23(금) 10:30
- 장 소 : 구미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축사)

○ 경상북도 수목원 개원식

- 일 시 : 2005. 9. 23(금) 15:30
- 장 소 : 포항시 죽장면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나종택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정보호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김순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경상북도문화상 심사위원회

- 일 시 : 2005. 9. 26(월) 14:30
- 장 소 : 도의회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 2005 경북도의회 의원연수회

- 일 시 : 2005. 9. 26(월) ~ 9. 27(화)
- 장 소 : 문경관광호텔
- 참 석 : 도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5. 9. 28(수) 12:00
- 장 소 :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17회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 일 시 : 2005. 9. 28(수) 10:00
- 장 소 : 문경 산양리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 상주자전거 축제참사 위문

- 일 시 : 2005. 10. 4(화) 15:00
- 장 소 : 상주시민회관(합동분향소)
- 참 석 : 이철우 의장외 도의원

○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 일 시 : 2005. 10. 5(수) 10:30
- 장 소 : 엑스코
- 참 석 : 이철우 의장, 이원만 기획과학위원회위원장, 김병진 기획과학
위원회간사, 김기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간사

○ 경북지역 혁신의날

- 일 시 : 2005. 10. 5(수) 15:00
- 장 소 : 엑스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전북 의정회 경상북도 방문 환영 만찬

- 일 시 : 2005. 10. 5(수) 17:30
- 장 소 : 경주보문단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27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 일 시 : 2005. 10. 5(수) 11:00
- 장 소 :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 이용석 농정위원회위원장

○ 제34회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 일 시 : 2005. 10. 5(수)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이용석 농정위원회위원장(축사)

○ 제87회 전국체전 기획단 현판식

- 일 시 : 2005. 10. 6(목) 11:00
- 장 소 : 도청구내(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46회 경상북도문화상 시상 및 경북종합예술제

- 일 시 : 2005. 10. 6(금) 16:00
- 장 소 : 문경시민 문화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채희영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진 기획과학
위원회간사

○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05. 10. 6(목) 11:0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 베트남 현지 「새마을회관」 준공식

- 일 시 : 2005. 10. 10 ~ 10. 15
- 장 소 :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 참 석 :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 간사

○ 제86회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5. 10. 12(수) 11:00
- 장 소 : 경산중고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황상조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VII. 5분 자유발언

□ 2005년 10월 13일(목) 제1차 본회의

◎ 우성호의원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 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7일 시군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한 시군의원정수시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초순 개정된 공직선거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구성된 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이번에 시군의원정수시안을 결정함에 있어 대체로 인구수에 50%, 읍면동수에 50% 가중치를 부여하여 의원정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기준, 즉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군별 시군의원정수결정시안의 인구기준 정수를 보면 본의원 출신지역인 영주시는 인구수 12만여명인데 의원정수는 11명입니다. 이는 인구수 11만여명인 상주시보다 오히려 의원정수가 2명 적고, 인구수 10만7,000여명인 칠곡군보다는 3명 적으며, 인구수 6만5,000여명인 의성군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산정기준이 어떻게,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인구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인구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읍면동별로 달라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인구편차가 4 대 1 수준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5 대 1 정도로 획정한 종전 선거법을 헌법재판소가 투표의 등가성이란 측면에서 위헌이라 함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3 대 1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동지역과 면지역의 인구편차를 4 대 1로 본 이번 기준은 명백히 위헌적 기준입니다. 도대체 이처럼 위헌적인 읍면동별 인구기준을 적용한 근거가 뭘니까?

인구기준 적용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인구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보편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려 6개 군이 최소정수 7인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6개 군에는 인구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부담이 의성,

영주, 상주, 예천, 문경, 김천, 영덕, 청도 등 중소 시군에 고스란히 전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군의원 정수산정에 적용된 인구기준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또한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군별 읍면동수는 시군별 또는 읍면동별 인구와는 커다란 상관관계 없이 정해져 있고 대체로 시군별 행정개혁의지에 따라서 증감 변동해왔습니다. 본의원 출신지역인 영주시를 보더라도 1998년10월 행정개혁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지역을 통폐합하여 4개동이 감소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읍면동수는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 역사적 변천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시군의원 정수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읍면동수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현존하는 읍면동수만을 고려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시군의원정수결정시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두 가지 결정기준인 인구수와 읍면동수 모두 합리성과 타당성, 보편성과 역사성을 크게 이탈한 위헌, 위법, 부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대체로 인구비례보다는 지역대표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서 인구 9,000여명인 울릉군이나 인구 27만여명인 경주시가 모두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개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의 정서에 기초의원 감소율을 일률 적용했을 뿐 시·도별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점 또한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내의 의회를 구성할 뿐 광역의회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시안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마치 광역의원 정수처럼 다루어서 시군간 기초의원 정수를 마구 조정했습니다. 시·도별로도 인구편차를 적용하지 않는 기초의원 정수산정에 있어서 시군별로 인구편차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본발상과 접근 자세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이번 결정시안의 실체적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대체로 현실정치 내지는 지방정치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로 구성된 나머지 정치적 현실 및 실태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도시지역의 일부 전문직종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어서 농촌지역 내지 도농복합적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거나 이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당,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기준설정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시안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중대한 결함과 오류를 내포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토록 할 것을 본의원은 이의근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원식의원 ◎

경제문화위원회소속 울진출신 임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3일 상주공연장참사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부상당하여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하루빨리 수습되어 안정을 되찾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주지역 현지에서 수습에 노고가 많으신 경상북도의회 이정백 부의장님, 장미향 의원님, 박두필의원님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엄청난 재앙이 곳곳에서 예보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재난에 대비한 안전진단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재난예상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위협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12월2일 제193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요지 중 경상북도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산과를 해양을 끼고 수산업을 하고 있는 해당 5개 시·군 지역에 수산사업소를 설치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보충질문 시 자치행정국장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도정질문추진상황보고서에는 본의원에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해당지역에 이전되어 어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책이 수립되어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행정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의 본뜻은 해당지역 어민들과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최근 북한·중국간의 2004년6월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민간으로 협약체결을 하여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 900여척의 대형 쌍끌이어선들이 2년 연속 오징어를 비롯 회유성 어족을 마구잡이 남획함으로써 어족자원 고갈로 인하여 동해안 어업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유가폭등과 수산자원 고갈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하 하는 오징어 및 회유성 어족을 동해안 어로 길목에서 중국어선들이 대량 남획하고 있어 특히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우리 어선들이 근해에서 오징어의 어획감소로 월북하여 조업을 하는 사례가 잦아 불법조업선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처벌받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도 어민들은 대정부 기관, 국회에도 건의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분노한 동해안 어업인들이 지난 8월29일 동해안어업인생존권확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 동해어장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고 우리 어선들도 북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 하루빨리 협의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을 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양곡 수송을 저지하겠다는 극한 상황까지 갈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인근하고 있는 동해안광역단체협회의 강원도, 부산, 경상남도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에 요청하여 중국 정부, 북한당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자제시키고 우리 어선들도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농민 어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원도와 경북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의 지역이 강원도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수산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예를 들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수산자원 고갈, 해마다 연속적인 태풍피해, 유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2002년부터 금년까지 양곡을 매년 60kg 1포씩을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유가인상폭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어선 척당 약 4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어민들에게 유가인상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미향의원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출신 장미향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의의 대변을 위해 앞장서서 많은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 신성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일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상주공연장 사고를 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10월3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는 MBC가요콘서트를 방청하기 위해 금일 오후 4시부터 군중이 응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녹화리허설이 끝나야 입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운동장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인파가 출입문 개방과 동시에 한꺼번에 입장하는 바람에 쉴지 못할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즉시 관과 민이 하나 되어 119 구급대, 보건소 차량, 해병전우회 차량으로 사상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사후수습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11명의 사망자와 16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화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는 추수를 앞둔 농촌지역에서 생애 한번만이라도 인기가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함께 했던 인파에 떠밀려 참혹하게 생을 마감하신 연약한 어르신과 어른들의 발아래 무참히 쓰러져간 못다 핀 꽃송이의 영정을 보며 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 된 마음으로 온 시민이 흐느껴 울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을 잃은 자녀들의 통곡소리에 시민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이제 막 싹트는 인재를 잃어버린 참담한 심정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슬픔에 오염하던 유족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연한 처신을 보며 유족들의 슬기로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의 동네 일이라고 수수방관 하지 않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조문이 이어졌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이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전해 주신 덕분에 유족들은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어처구니없는 참사 앞에 우리 상주시민 모두는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작은 불씨를 살려서 참사를 당한 유족 돕기 성금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창구를 마련하자마자 시장·군수 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이어지는 온정에 모든 시민은 감사하며 참담한 마음에 뉘 놓고 있던 유족은 물론 상주시민 모두는 과오를 반성하고 결연히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가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유흥업소를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애도의 날을 정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상제가 되어 합동분향소를 지키며 진정한 상주인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불행하게도 상주에서 일어났기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주시가 질서 없는 도시라고 질타하기 보다는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도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남겨준 가슴 아픈 교훈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재난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책과 관련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주참사 이후에 경상북도에서는 발 빠르게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일선 시·군에 시달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특단의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찰나의 선택이 엄청난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철저한 행정력과 예방기관, 경찰력의 상호공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대형 사고는 더 이상 없다고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경상북도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의식 강화로 아까운 생명이 무고하게 쓰러져가는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기의원 ◎

김천출신 김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서 상주자전거 축제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 빨리 쾌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보니까 도지사, 부지사 다 안계시고 말이지, 좀 들으셔야 하는데 김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 보유미 수매가격이 작년대비 20%나 삭감이 되었으니 그 내용을 보면 특등 40kg 한 포대가 지난해 5만9,940원이었던 것이 4만8,92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등, 삼등도 같은 비율로 20%정도 내렸습니다. 수매량도 지난해 비해 20%나 줄어서 시중 쌀값은 폭락을 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고민이고 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반면에 비료값은 작년 초에 비해서 요소가 60%를 비롯해서 대부분 30% 이상 상승을 하였고, 농기계를 움직이는 경유가격 또한 7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농민들 한숨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깊은 실음에 잠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1차산업의 종사자들은 어차피 희생은 면치 어렵겠지만 이 나라는 우리 농민들에게 너무 심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위 군사정부라는 5공, 6공시절이나 그 이전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격양가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이른바 민주투사의 정부들은 농민단체들의 후광을 업고 정권을 잡고는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정책만 남발해 온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화해라는 미명하에 북한에 화학비료를 엄청나게 많은 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농민들에게는 친환경농업을 명목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한다면서 가격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는 왜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합니까? 우리 농민들은 다 압니다. 북에 지원해 준 비료는 우리 농민이 구입한 비료가격을 올려서 그 차액으로 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자체의 장들은 각종 축제와 전시성 사업을 무성하게 개최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순박한 농민과 농민단체를 단골 엑스트라로 동원해 모양새 갖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재, 풍수해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오류로 인한 관재입니다. 농업예산 집행 부분은 원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급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경남에 소재하는 부산물 비료회사가 포대당 농민과 직거래 시에는 1,800원씩 받던 것을 농협중앙회와 공급계약을 하고서는 3,500원씩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시절 농업관계 업자들은 잘 해 먹었습니다. 농약, 비료, 농자재, 농기계 등 원가 개념없이 제 멋대로 가격을 산정하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예산을 잘 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6년 예산편성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정부비축미 수매량과 가격을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중앙요로에 긴급히 특단의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 2006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촌의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여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농업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방치된다면 결국 고령화된 농민들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젊은 농업경영인들은 모두 농촌을 외면하고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경북만이라도 지사께서는 관계관들과 지혜를 모아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청 인사관계입니다.

300만 도민의 공공 살림살이를 하는 도청의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과장 2명 국장 2명 등 간부공무원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 등 중요한 시기에 간부자리를 오랫동안 비운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인사공백이 오래되면 도청공무원 내부의 안정과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차피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이동할 수 있는 일인데 오래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인사를 빨리 단행해야 도정이 원활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석호의원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출신 김석호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비장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 전개로 시작된 경제개발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여 왔습니다. 1995년 감격의 1만불 시대를 열었고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혜택을 우리 모두가 향유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우리는 유례없는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1인당 GNP가 6,774달러로 추락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혹독한 외환위기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사라져가던 연탄이 유통되었고 농촌에서는 장작보일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으로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내몰리면서도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원동력으로 최단시간에 IMF 체제를 탈출하였습니다.

세계는 우리 국민의 위대하고 고귀한 희생과 단결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국민소득은 1만불을 회복하였고, 2004년 1만4,162달러를 기록, 2만불 시대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2004년은 수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된 2,538억 달러에 달하고 29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소위 잃어버린 8년을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은 60%에 육박하는 초고유가의 시련으로 우리는 다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심각한 건 고유가의 근본 원인이 기초자원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브릭스(BRIC's)의 등장과 국제투기자본의 석유시장 유입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수요에 의한 고유가 시대를 의미하며 장기적 현상으로 고착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은 인상되고 수출증가율, 투자증가율, 소비증가율은 감소된다고 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원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기본자원인 철, 석탄, 천연가스 등 모든 원자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의 피해는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655만원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 711만원에 비해 46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해 49만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났고 이는 48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의 초고유가 시대를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0년전에는 유가가 10불만 올라도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흔하던 에너지절약 캠페인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란위기 때처럼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4만명이나 늘렸으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차관급을 22명이나 늘렸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살림살이는 외면하고 터무니 없이 예산을 늘려 국민 1인당 채무가 사상 최초로 500만원대를 넘어섰으며 내년 1인당 국민세 부담은 356만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은 혈세로 공무원을 부양하고 방만한 국정운영의 빚을 갚아야 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본의원은 가정과 각 산업체에서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소비 운동을 전개하여 장기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데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빈국, 대한민국 오직 사람만이 자원이며 수출만이 살 길인 이 나라에서 기초자원이 가격이 폭등하고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를 위기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환란위기를 통해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서 고유가 시대에 현명한 대책을 세우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5년 10월 27일(목) 제2차 본회의

◎ 방대선의원 ◎

부지사님, 지사님은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 행정부지사 김용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역 행사 관계가 많아 가지고...)

이 사안이 정말로 중요하고, 저의 이 5분발언 내용이 지사님께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 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부지사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제가 발언한 내용이 부지사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만 제가 맨 처음 도의원이 되어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정말로 지사를 상대로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때도 꼭 오늘과 같이 지사님이,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이 부활이 되고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도 저는 7년만에 이거 처음 합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을, 이 민의의 전당인, 도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외국 출장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청와대 부름을 받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5월31일에는 2006년도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약 한 7개월여 남아 있는데 지역 내에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면서 선거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지역의 공직사회에서는 선거바람 정도가 아니라 선거열병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개탄스럽고도 한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경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잇따라 물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어디까지나 개인의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경북도와 시·군 고위공무원들이 오로지 자기 편의대로 퇴직을 하고 있으며, 부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더욱이 이러한 사퇴 행렬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계속되는 땀질식의 잦은 인사로 도정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일부 직책은 공석이 불가피해져 도정의 업무공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전, 방폐장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현안사항과 최근 정부의 쌀 개방 및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국회비준 반대항의와 집단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공무원들의 일부는 본업은 뒷전인 채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출장을 빌미로 해서 출마 예상지역을 방문해서 얼굴 알리기 등에 골몰하고 있음은 현직의 이점을 누리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에 전 3백만 도민을 참으로 아연실색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선거바람은 공직사회 내의 파벌을 조성하고 급기야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지방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차천 타천으로 출마예상자로 분류되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이든지 출마설이 나도는 당사자라면 분명한 거취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출마예정자들은 조직을 위해서나 또 후배들을 위해서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기 사퇴하여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자리에 눌러앉아 눈치를 보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그러한 모양새는 자신이 바로 일신상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퇴결정이 늦어질수록 자신으로 인해서 도정의 공백만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러한 기회에 출마예정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지방선거로 인한 도정의 공백은 물론 선거열병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오직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자발적인 결의라도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지사께서는 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일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을 엄격하게 바로 잡고 진정 도민의 공복으로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중히 다스려나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아울러 주요 직위의 공석을 방지하여 도정의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4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조례안 : 4건】

- 경북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0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를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경북개발공사”를 “경상북도개발공사”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제33조 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영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의 5배”로 한다

제38조 제2항 후단 중 “지방공기업법”을 “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단서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경북개발공사.....	제1조(목적).....경상북도개발공사.....	공기업 인지도 높임
제20조(사업) ①생략 1.~7. (생략) (신설)	제20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토지의 취득·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사업영역 확대
8~9.(생략)	9~10.(현행과 같음)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삭제) ②.....영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①생략 ②.....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지방세법」..	근거규정 변경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0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8조제4항 중 “지방공기업법”을 각각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제1항 중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 ①생략 <신설> ②~⑤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 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⑥과 같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 춘 자를 <u>사장</u> 후보로 추 천하여야 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u>공개모집의 방</u> <u>법에 의하여 사장</u>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0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람장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업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100퍼센트를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0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교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공급시설”(이동식충전시설 및 모충전소(M/S)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충전시설설치사업자”라 함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 제1999-144호(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범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 대상지역) 이 조례에 의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 대상 지역은 시(市)단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郡)단위 지역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적용 대상 자동차) 이 조례에 의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 대상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2. 청소차(적재정량 5톤 이상)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6조(대상기관 및 교체명령)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 등은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 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공공기관
2.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회의 의결을 받아 경유사용자동차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관(「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다목에 의

한 공급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지 않아 당해 지역 내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동충전차량 등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③시장·군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폐차계획에 따라 익년도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6월 30일까지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명령(별지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명령 대상 자동차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천연가스차량으로의 교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전용노선지정 등) ①시장·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를 명령할 때 대중교통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천연가스자동차 전용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천연가스자동차를 천연가스 충전시설 인근을 운행하는 노선에 집중 배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된 인근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천연가스자동차를 배차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 ①천연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회차지 포함)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4.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5. 「주차장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6. 「도시공원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7. 「자연공원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8. 기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전 지역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유지 등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충전시설 부지 임대료 및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천연가스 충전시설이나 이송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 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자동

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익년도 대·폐차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대상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익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안)을 작성하여 익년도 본 예산 편성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 지원 자금 등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설치) ①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하에 천연 가스 자동차보급협의회(이하 “보급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급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소속직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에너지공급 관련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 관련기관의 공무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천연가스 공급 사업자 등 12인 이내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보급협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보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명령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자동차 교체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⑥위원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⑦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시·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 대상지역중 천연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지역에 대하여는 천연가스공급관이나 이동식 천연가스충전소의 설치가 완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회의 설치시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 3호 내지 20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명령서 번호		천 연 가 스 자 동 차 교 체 명 령 서		
제 호				
소 유 자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명 령 사 항	⑤ 자동차등록번호		⑥ 차종및연식	
	⑦ 최초 등록일		⑧ 차령만료일	
	⑨ 교 체 기 한	년 월 일까지		
	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 및 경상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 시행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및 구입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군 수) 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이라 함은 <u>규칙 제85조의 3 제1호의 규정</u> 에 …….	제2조(정의) …… 1. …… 「 <u>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u> 」 제85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
제5조(적용 대상 자동차) 이 조례에 의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 대상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u> 」 제3조 제1호 <u>가목 및 다목의</u> …… <u> 시내버스</u>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제5조(적용 대상 자동차)…… 1. …… <u>가목 내지 다목의</u> …… <u> 시내 · 농어촌버스</u>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제6조(대상기관 및 교체명령) ① (생략) 1. (생략) 2. <u> 시내버스</u>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② …… …… <u>보급협의회의</u> …… ……	제6조(대상기관 및 교체명령) ① (좌동) 1. (좌동) 2. <u> 시내 · 농어촌버스</u>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② …… … <u>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u> …… ……
제9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 <u>보급협의회의</u> ……	제9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 ~ ② (좌동) ③ …… <u>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u>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행정사무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1. 감사기간 : 2005년 11월 22일 ~ 12월 1일(10일간)

2. 감사대상

가. 대상기관

〈경상북도〉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기타	
계	50	12	38	4
의회운영	1		○ 의회사무처	
기획과학	9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과학정보산업국	○ 공무원교육원 ○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 경북개발공사	
행정사회	4	○ 자치행정국 ○ 보건복지여성국	○ 자연환경연수원 ○ 경도대학	
교육환경	6	○ 환경산림수산국	○ 보건환경연구원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 정	4	○ 농정국	○ 농업기술원 ○ 가축위생시험소 ○ 축산기술연구소	
경제문화	6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관광국	○ 경북통상(주) ○ 경상북도운수연수원 ○ 경상북도체육회 ○ 한국국학진흥원	
건설소방	20	○ 건설도시재난국 ○ 소방본부	○ 소방학교, 포항 외 15개 소방서 ○ 종합건설사업소	○ 포리~벌병간도로 확포장 공사(예천) ○ 수하~왕피리간도로 확포 장공사(영양) ○ 북안~고경간도로 확포장 공사(영천) ○ 고령 우곡교 건설공사 (고령)

〈경상북도교육청〉

구 분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기타	
계	21	2	19	
교육환경		○ 교육국 ○ 기획관리국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 화랑교육원 ○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 경상북도과학교육원 ○ 경상북도립 안동·구미·상주도서관 ○ 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청	

나. 대상 사무

(1)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관할 구역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속하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

단, 위임받은 국가 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2) 주요 감사사항

구 분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의회운영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 2005년도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 2005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06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획과학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 주요시책 업무 추진사항 ○ 2004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 2005년도 예산집행 상황 ○ 2006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행정사회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 2004, 2005년도 주요시책 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 2004, 2005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교육환경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경상북도〉 ○ 2005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004~2005년도 상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2005년도 민원처리현황 ○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구 분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교육환경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 2005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004~2005년도 상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 2005년도 민원처리현황 ○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 ○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폐교 활용대책 ○ 사학지원, 교육정보화사업 등 전반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농정행정 사무감사 위원회	○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 2005년도 예산집행 사항 및 미집행 사항 ○ 2006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경제문화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5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미집행 사항 ○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건설소방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 2004, 2005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 2004, 200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 ○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다. 제출할 서류

(1) 업무보고서

(2) 감사자료

〈경상북도〉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 개별 요구사항	비고
	합 계	79	933	
의회운영	소 계		6	
기획과학	소 계	9	190	
	공보관실		11	
	감사관실		15	
	기획관리실		63	
	과학정보산업국		31	
	공무원교육원		15	
	지방공사의료원		37	
	경북개발공사		18	
행정사회	소 계	19	194	
	자치행정국		85	
	사회복지여성국		62	
	자연환경연수원		16	
	경도대학		31	
교육환경	소 계	10	83	
	보건환경산림국		55	
	보건환경연구원		8	
	산림환경연구소		7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5	
	수산자원개발연구소		4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4	
농 정	소 계	14	208	
	농정국		135	
	농업기술원		73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 요구사항	비고
경제문화	소 계	11	98	
	경제통상실		49	
	문화체육관광국		49	
건설소방	소 계	16	154	
	건설도시국		88	
	종합건설사업소		14	
	소방본부		52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 요구사항	비고
교육환경	계	23	55	
	본청(직속기관)	5	55	
	시군교육청	18		

※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덧붙임

(3) 작성방법

○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수감준비를 하여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200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국 단위로 편철 후 2005년 11월 10일 (목)까지 소관상임위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작성기준일을 따로 지정하였거나 10월31일 현재로 작성이 곤란한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시를 요함

- 제출되는 감사자료의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위원회별 20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도 동일 방법임.
- 감사대상 기관별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별책 작성
- 「업무보고」에 포함될 도정보고 내용은 감사대상 기관별로
 -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 기타 특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기본으로 “위원회별 주요감사 사항”의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타부서 소관은 후단에 포함.

3. 감사위원회 편성

가.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위원장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감사 위원 : 박승학, 김병진, 우성호, 김순전, 이호근, 장미향,
장 욱, 정무웅, 정상진, 한혜련, 황복희, 황상조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주근호, 행정주사 김홍석, 행정주사보 황욱준, 속기사

나. 기획과학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원만 기획과학위원장
- 감사 위원 : 김병진, 권경호, 권종연, 양재경, 장찬식, 장하숙,
정무웅, 김기홍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이승률, 행정주사 백승걸, 행정주사보 정창호, 속기사

다. 행정사회위원회

○ 감사위원장 :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 감사 위원 : 황상조, 김석호, 김진기, 방대선, 이상천, 이상태,
장대진, 황복희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남천희, 행정주사 김재한, 행정주사보 도재균, 속기사

라. 교육환경위원회

○ 감사위원장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 감사 위원 : 장미향, 권준택, 김선중, 김순견, 김응규, 김준호,
박종욱, 이 달, 이우경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박남기, 행정주사 정중태, 행정주사보 권기영, 속기사

마. 농정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용석 농정위원장

○ 감사 위원 : 정상진, 강영서, 김주연, 박승학, 방유봉, 손규삼,
손만덕, 신영호, 이상효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이효식, 행정주사 허재원, 행정주사보 김영삼, 속기사

바. 경제문화위원회

- 감사위원장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 감사 위원 : 한혜련, 김정기, 김희문, 박두필, 우성호, 이정백, 임원식, 최원병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구본학, 행정주사 홍성구, 행정주사보 이완교, 속기사

사. 건설소방위원회

- 감사위원장 : 박영화 건설소방위원장
- 감사 위원 : 장 욱, 김기대, 김정자, 안순덕, 윤경희, 이종철, 이현준, 이호근의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이찬, 행정주사 윤홍식, 행정주사보 이종록, 속기사

4. 위원회별 감사일정 : 별 첨

행정사무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1.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 선언”의 선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감사선언을 선포함.

※ 감사는 회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 선언을 선포하는 것임.

나. 위원장 인사

○ 먼저 “감사 선언”을 한 후에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됨.

○ 의사일정은 “2005년도○○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상정

다. 증인 선서

○ 선서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함.

○ 선서 요령

- 상임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별첨 양식)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든다.

-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지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증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라.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 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 현황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함.

마. 질의 · 답변

-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해당기관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형식인데, 이 경우에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이 결국 「질의 · 답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방 법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출석증인의 답변시에 질의시간과 진행 방법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 질의 · 답변식)에 대한 결정은 당해 위원회에서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바. 현지 확인

○ 현지 확인의 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현장 또는 현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또는 현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지 확인의 과정이며, 현지 확인 활동은 「검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 중 일부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도 있음.

○ 현지 확인의 진행순서

현지 확인을 하는 데는 정형화된 진행순서는 없으나 대체로

- ① 개회
- ② 위원장 인사
- ③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보고
- ④ 질의·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 ⑤ 제출서류 실태 파악(필요한 서류 봉인)
- ⑥ 위원장 인사 순으로 진행함

사.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강평의 의의

감사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면 위원장은 간단하게 감사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당부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함.

○ 종료 선언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끝나면 「이상으로 ○○기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당해 기관의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함

2. 현지확인 협조

가. 감사장 설치

-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로 통보받은 즉시 감사위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수감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감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위원회 수감대상기관(부서)에서는 현지확인시에 설계도, 시방서,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 별첨 「좌석 배치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좌석, 전문위원 좌석, 속기사의 속기를 위한 좌석을 배치하되 해당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속기록 작성 준비

- 속기석은 속기사의 교대가 가능하도록 2개 좌석을 배치하고,
- 속기석에는 속기 기록 청취용 「헤드폰」을 설치하고
- 감사장에는 감사과정의 모든 질의·답변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와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 기타 속기사로부터 속기에 필요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다. 감사장 안내

- 감사장소의 안내는 수감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여 감사당일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

라. 현지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

현지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가능한 의회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으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감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사무감사 사항의 기록 및 홍보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별 모든 감사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사항과 함께 홍보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본 감사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감기관 등에서 조치.

3. 감사실시 결과보고 협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12.13 (화)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부서)
- 감사실시 결과
-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방법
-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처리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 건의사항(건의나 희망사항)
- 주요 근거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 별첨 요함
- 기타 특기사항

4. 증인출석 요구

가. 증인출석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출석을 요구

나.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다.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1)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2) 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라. 증인 출석 불가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과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은 증언 또는 진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시는 감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증인출석요구 내역

(1)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의회운영 감사위원회 (13인)	12. 1(목) 11:00	○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의실)	○ 의회사무처장 ○ 총무담당관 ○ 의사담당관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2) 기획과학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기획과학 감사위원회 (9인)	11.22(화) 11:00	○ 포항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수) 11:00	○ 김천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11.24(목) 11:00	○ 안동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11.25(금) 11:00	○ 경북개발공사 (동 공사)	○ 사장, 부장, 과장	
	11.28(월) 11:00	○ 공무원교육원 (동 교육원)	○ 원장, 과장	
	11.29(화) 11:00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상임위원회의실)	○ 실장, 기획관, 담당관, 단장 ○ 공보관	
	11.30(수) 11:00	○ 과학정보산업국 ○ 감사관실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감사관	
	12. 1(목)	○ 감사결과 정리		

(3) 행정사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행정사회 감사위원회 (9인)	11.22(화) 11:00	○ 자치 행정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3(수) 11:00	○ 자치 행정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4(목) 11:00	○ 보건복지여성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5(금) 11:00	○ 보건복지여성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8(월) 11:00	○ 자연환경연수원 (동 연수원)	○ 원장	〃
	11.29(화) 11:00	○ 경도대학 (동 대학)	○ 학장, 과장	〃
	11.30 ~ 12. 1			○ 감사결과 정리

(4) 교육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교육환경 감사위원회 (10인)	11.22(화) 11:00	○ 환경산림수산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 수산자원개발 연구소, 민물고기연구 센터, 팔공산도립공 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 원장, 부장, 지원장	○ 업무보고 및 질의 ○ 자료제출 등 ○ 업무보고 및 질의 ○ 자료제출 등
	11.23(수) 11:00	○ 환경산림수산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 수산자원개발 연구소, 민물고기연구 센터, 팔공산도립공 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 원장, 부장, 지원장	○ 답변 및 보충 질의 ○ 답변 및 보충 질의
	11.24(목)	○ 감사결과 정리		
	11.25(금) 11:00	○ 도 교육청 (직속기관포함) (상임위원회의실)	○ 부교육감, 국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
	11.26(토) ~ 11.27(일)	○ 감사결과 정리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교육환경 감사위원회 (10인)	11.28(월) 11:00	○ 도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상임위원회의실)	○ 부교육감, 국장, 과장	○ 답변 및 보충 질의
	11.29(화) 11:00	○ 김천 · 구미 · 상주교육청 (구미교육청)	○ 교육장	○ 업무보고, 질의 답변
	11.30(수) 11:00	○ 문경 · 예천 · 안동 · 의성 교육청 (안동교육청)	○ 교육장	○ 업무보고, 질의 답변
	12. 1(목) 11:00	○ 경주 · 영천 · 경산 · 청도 교육청 (경주교육청)	○ 교육장	○ 업무보고, 질의 답변

(5) 농정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농정감사 위 원 회 (10인)	11.22(화) 11:00	○ 농정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포함)	○ 업무보고
	11.23(수) 11:00	○ 생물자원 연구소 (동 사업소)	○ 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풍기인삼 시험장 (동 사업소)	○ 장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4(목) 11:00	○ 영양고추 시험장 (동 사업소)	○ 장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5(금) 11:00	○ 가축위생 시험소 (동 시험소)	○ 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8(월) 11:00	○ 농업기술원 (동 회의실)	○ 원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 시험장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9(화) 11:00	○ 농정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포함)	○ 질의 답변 및 보충질의
	1130~12. 1	○ 자료정리		

(6) 경제문화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경제문화 감사위원회 (9인)	11.22(화) 11:00	○ 경제통상실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동북아사무국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3(수) 11:00	○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단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상임위원회의실)	○ 사무총장, 처장, 부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4(목) 11:00	○ 경북통상(주)	○ 사장, 총괄 본부장, 팀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경상북도 체육회 (현지)	○ 사무처장, 사무차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5(금) 11:00	○ 사)경상북도 운수연수원 (현지)	○ 원장, 사무국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8(월) 11:00	○ 한국국학진흥원 (현지)	○ 원장, 기획관리처장, 사무국장, 부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9(화) ~ 12. 1(목)	○ 감사결과 정리		

(7)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건설소방 감사위원회 (9인)	11.22(화) 11:00	○ 문경소방서 (동 소방서)	○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포리~벌빙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지확인)		
	11.23(수) 10:00	○ 소방학교 (동 학교)	○ 학교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수하~왕피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지확인)		
	11.24(목) 10:00	○ 영천소방서 (동 소방서)	○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북안~고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지확인)		
	11.25(금) 11:00	○ 종합건설사업소 (동 사업소)	○ 소장, 북부지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고령 우곡교 건설공사 (현지확인)		
	11.28(월) 11:00	○ 소방본부 (상임위원회의실)	○ 본부장, 과장,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11.29(화) 11:00	○ 건설도시재난국 (상임위원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11.30(수) ~ 12. 1(목)	○ 감사결과 정리		

선 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월 일

기관명 :

○○○장 ○ ○ ○ (인)

의정활동보고서(제202회 임시회)

2005. 11 인쇄 / 2005.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